

제 호

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

[]자궁내 정자주입 시술

[]체외수정 시술

○ 기관의 명칭 :

○ 기관의 소재지 :

○ 기관의 장 성명 :

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항에 따라
위와 같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

변경사항 등			
연 월 일	내 용	확인자	서명